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입법동향 – 2024 - 제5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전국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1
2.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4
3.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8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11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13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아일랜드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 14
2.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 22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32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인사위원회 위원 의회 규칙 명시 가능 여부 ····· 37
2.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42

Ⅵ. 법령 해석 사례

1. 새만금 사업 외국투자가 회사채 평가 관련 ····· 46
2. 시 · 도지사가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조사 가능 여부 ····· 50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4호, 2024. 5. 20., 제정】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제정이유

◇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사회안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사업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제5~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곳(서울특별시)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도의 **2024년 1분기 범죄발생 건수**는 **2023년 4분기 대비 227건이 증가**하였음. ※ 살인기수 등 **강력범죄는 19건 증가**

○ 우리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조례**로 서울시와 같이 **안전물품 등**을 **사전**에 **지원**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개정)의 검토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4호, 2024.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시행 2024. 5. 9., 울산광역시조례 제2943호, 2024. 5. 9., 제정】

□ 소관위원회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제정이유

◇ **보도 등**을 **점유**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대해 규정함(제6조).

다. 보행안조도우미 임무에 대해 규정함(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9곳(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세종, 울산, 제주)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점용: 차지하여 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공사장을 비롯한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에는 **소홀**한 바가 있음.

○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시공자**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시행 2024. 5. 9.] [울산광역시조례 제2943호, 2024. 5. 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등**을 **점용**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보도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 등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이거나 기존 보도를 줄여 임시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으로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시행주체**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한다.

③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비롯한 **보행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상** 및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 구간 **전체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을 **거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격 및 교육) ①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시장이 실시·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2. 보도 공사 시공 관련 교육
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교육
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 및 친절 교육
6.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및 **우회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관계자에게 전달

5.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수행**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4.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나 제8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4. 5.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43호, 2024. 5. 20., 제정】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6곳(대구, 대전, 세종, 전남, 충남, 충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 4. 1.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4,538명**으로 해당 학생들은 소속 학교 및 특수교육센터(14개 시·군 설치)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지원** 등의 **한계**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안)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4. 5.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43호, 2024.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대해 규정함(제40조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0조 제7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40조 제8항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 이 법률안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검사** 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 우리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399호)하고 있지만 **치료보호**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 법 시행(2025. 2. 7.) 전(前)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9호, 2024.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시·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에 **거점병원 지정에 관한 요건 등**과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05호, 통권 제243호, 김지현】

◇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각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육아휴직 기간은 상당한 편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주된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자녀 양육 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출산휴가 기간**을 **꾸준히 연장**하고 **가족돌봄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규**를 **제정**한 아일랜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주제어: 유연근무 재택근무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부성휴가 입양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자영업자 저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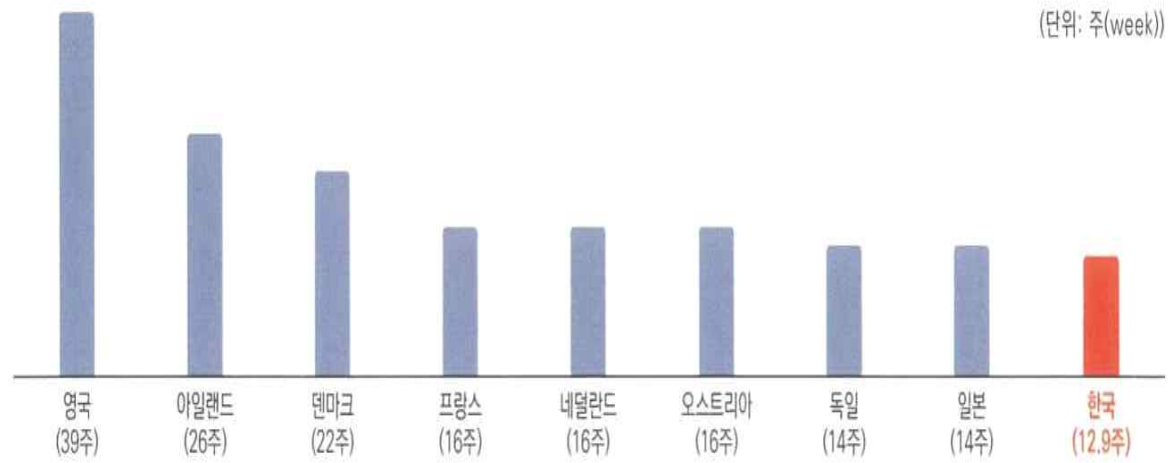
□ 도입

❍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각국**은 전통적으로 **산모의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육아휴직(parental leave) 등**을 시행해 왔다. 더불어 **최근**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 출산휴가란 자녀의 출산 직전·직후에 산모가 갖는 휴가를 의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산모의 배우자 등을 위한 휴가이며,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자녀의 출생·입양을 근거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상당 기간(1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유급 출산휴가(12.9주)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는 이미 이사회지침에서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14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산모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OECD Family Database, 2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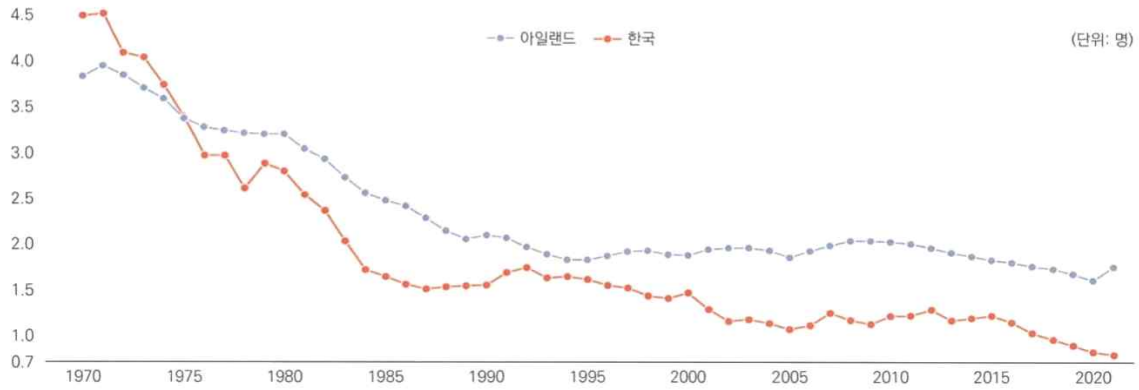


❍ **우리 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규정**한다. **EU지침**(2019/1158)에서는 **근무일 기준 10일**로 명시하여 **최소 2주(週)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프랑스**는 **25일**, **벨기에**는 **20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형태**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하여 **자영업 비율이 높은 편**(23.5%)이나,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출산급여**나 **배우자 출산급여**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가파른 합계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한국과 아일랜드의 합계출산율 추이(OECD Data, 1970-2022)[11]



❍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통해 **출산휴가 시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고, 2004년과 2006년 법 개정을 통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에서 가족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아일랜드 입법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 주요 입법례

1. 출산 · 입양

❍ 출산휴가

- **아일랜드**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모성휴가(maternity leave)라 부르며, 현행 「1994년 모성보호법」(Maternity Protection Act 1994)에서는 **기본 출산휴가**의 **최소기간**을 **26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본 출산휴가 이후 16주**의 **'추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제14조) **최대 42주의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제23조).
- 아일랜드 **국가연금**인 '소득비례 사회보험료'(Pay Related Social Insurance: 이하 'PRSI')를 일정 기간 내 **최소 39주**를 **납부한 근로자** 등은 기본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휴가지원금'(matern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우리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부성(父性)휴가'**(paternity leave)는 「2016년 부성휴가 및 지원법」(Paternity Leave and Benefit Act 2016)에서 규정한다. 대상자(통상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배우자를 돕기 위하여 **2주의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제6조).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무효**이다(제20조). **'PRSI'**를 **일정 납부**한 **근로자**는 부성휴가 기간 동안 **'부성휴가 지원금'(patern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다(제31조).

❍ 입양휴가

- **아일랜드**에서는 자녀 입양 시에도 **입양휴가(adoptive leave)**가 **가능**하다.

「1995년 입양휴가법」(Adoptive Leave Act 1995)에서 **최소 24주**의 **입양휴가**를 **규정**하고 있다(제6조). 24주의 입양휴가 사용 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입양휴가'**로 **최대 16주**를 사용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의 출산·입양 관련 지원**

- 아일랜드는 출산휴가지원금과 부성휴가지원금을 우리의 고용보험보다 범위가 넓은 국가연금인 'PRSI'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도 **PRSI**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는 일정 기간 내 **52주 이상 'PRSI'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출산 휴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제48조). 또한 자영업자는 **부성휴가 지원금**과 **입양휴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2. 육아

❍ 아일랜드의 **육아휴직**은 **유급 7주**의 **'단기 육아휴가'**(「2019년 육아휴가 및 혜택법」)와 **무급 26주**의 **'장기 육아휴직'**(「1998년 육아휴직법」)으로 구분한다. **26주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12세 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인 경우는 **16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 가족돌봄

❍ 아일랜드는 2023년 4월 「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Work Life Balanc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3)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1998년 육아휴직법」(Parental Leave Act 1998)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 **유연근무제**

-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유연근무(Flexible Working: FW)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제8조). **근로자**는 **12세 미만 자녀 돌봄** 또는 **가족**이 **심각한 의료적 원인**으로 인해 상당한 보살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유연근무제'를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장기적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을 받은 고용주는 4주 이내에 요청을 승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고 거절 통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관련 분쟁 시 노동법원(Labour Court)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4. 재택근무제

❍ 재택근무제 또는 원격근무제에 대하여 「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하에서 새롭게 규정하였다.

❍ 재택근무(Remote Working: RW)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0조).

고용주는 접수 4주 이내에 요청을 승인하거나,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고 거절 통지할 수 있다(제21조). 노동법원은 분쟁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제27조).

□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는 **1년(52주)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OECD 회원국**의 **평균 기간(33.3주)**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료**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등이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이에 우리의 **현행 유급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출산 관련 휴가기간**을 **연장**하고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출산 관련 휴가기간 연장**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목적은 상이하며, 산모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현행 출산휴가 기간(90일)**을 유럽 이사회 지침의 **14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아일랜드는 26주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역시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근무일 기준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입양휴가 도입**

우리 법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별도의 입양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일랜드는 육아휴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입양휴가(24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향후 **입양휴가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자영업자 출산지원 강화**

아일랜드의 경우 출산휴가지원금과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등이 자영업자에게도 지원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 적용자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산급여 금액**도 **제한적**이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에 대하여 **유급 출산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도입**

자녀 양육 시 일과 가정을 현실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입법에서 볼 수 있는 **가족돌봄 유연근무제**나 **모든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요청**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을 우리 입법에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 한국과 아일랜드의 출산·양육 관련 휴가·휴직제도 비교[25]

구분		한국	아일랜드	시사점
출산·입양	출산휴가	90일(유급) • 출산전후휴가로 불림	26주(유급) • 추가 출산휴가: 16주(무급)	출산휴가 기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74조	「1994년 모성보호법」 제8조 및 제14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2주(유급) • 부성휴가(paternity leave)로 불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근무일 기준임을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16년 부성휴가 및 지원법」 제6조	
	입양휴가	-	입양휴가(adoptive leave): 24주(유급) • 추가 입양휴가: 16주(무급)	입양휴가 신설
			「1995년 입양휴가법」 제6조 및 제8조	
육아	육아휴직	1년(유급) •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휴가(parent's leave): 7주(유급) • 2세 미만 자녀 • 2024년에 9주로 연장	-
			「2019년 육아휴가 및 혜택법」 제5조	
			육아휴직(parental leave): 26주(무급) • 12세 미만 자녀 • 16세 미만 자녀 (장애·장기질병)	육아휴직 사용기한 연장(12세 또는 16세 상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998년 육아휴직법」 제6조	
가족돌봄	가족돌봄 휴직	연 90일(무급)	최대 104주(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2001년 간병자휴직법」 제6조~제8조	
	가족돌봄 휴가	연 10일(무급)	연 5일(무급) • 간병휴가(leave for medical care)로 불림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단축근로: 일 1시간~5시간 • 질병, 사고, 노령 • 1년 이내(추가 2년 연장)	유연근무 (flexible working) • 12세 미만 자녀 • 16세 미만 자녀 (장애·장기질병) • 의료적 원인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	유연근무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재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	재택근무(remote working) • 근로자(출산·육아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재택근무제 도입
			「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9조	

2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01호, 통권 제239호, 조경희】

◇ **경제안보**는 외부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전략으로, 특히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형태**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일본은 2022년 5월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법률」(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한 후에 최근까지 기본 방침 및 지침,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사회기반 업종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기국회(2024.1.26.~6.23., 150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공급망 3법**을 **제·개정**하였다. 이 중 **「공급망기본법」**은 2024년 6월 시행 예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기본 방침과 지침에서 **경제안보 기본방향**과 **특정 중요물자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령제정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관련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주제어: 공급망, 특정중요물자, 특정사회기반, 특정중요기술, 특허출원 비공개

□ 도입

❍ **일본은** 국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월 18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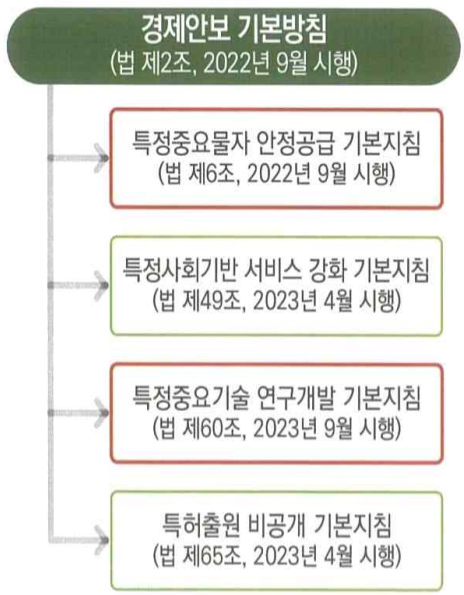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규정한 점에 **특징**이 있으며, **총 7장 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제2장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제6조~제48조)
- 제3장 특정사회기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제49조~제59조)
- 제4장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제60조~제64조)
-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65조~제85조)
- 제6장 기타규칙 (제86조~제91조)
- 제7장 벌칙 (제92조~제99조) 부칙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 이후 경제안보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실시정책으로 **4개 경제시책**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그림 1]

❍ 2024년 일본 정기국회에 항만을 포함한 특정 사회기반 업종 범위의 확장과 동법 부대결의에서 정한 경제안보 기밀보호 제도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림 1 경제안보 기본방침과 기본지침



- 참의원·중의원 부대결의(附帶決意)는 법률 제정 시에 추가된 국회 권고사항으로, 참의원과 중의원은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부대결의**로 **"안전보장을 위한 경제시책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에 있어 필요한 **기밀보호제도**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 및 기본방침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특정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 등 **4개 경제시책**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안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 기본방침**은 경제적 지원과 규제의 대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의 추진은 국제정세와 사회경제구조의 위협에 대응하여 **시장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과 **규제**의 **양면**에서 **관여**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내각부**(경제안전보장추진국)에서 **정보**를 **집약**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상호조정을 통해 **경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확보**해 나가야 한다.

2. 경제안전보장 기본지침

가.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기본지침

❍ **특정중요물자**는 **국민의 생존**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로, 특정중요물자 공급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령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며, 특정중요물자 **소관부처**는 관련 **대응방침**을 **수립**한다.
- **민간기업**은 기본지침과 대응방침에 기초하여 **특정중요물자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특정중요물자 소관 부처**가 내각총리대신 및 관계행정기관과 **사전협의 후**에 민간기업의 공급 확보계획을 인정하면 **정부 지정 기구**에서 **지원**한다.

❍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기본지침’**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정국가**로부터의 **공급 편중, 수출제한 위험** 및 **대체 가능성**의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정한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국민 생존 필수불가결성, 과도한 국외의존성, 공급단절 가능성, 신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은 상기 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11개 물자**(항균성물질(의약품), 비료, 영구자석, 공작기계와 산업용로봇, 항공기부품, 반도체소자와 집적회로, 축전지, 클라우드프로그램, 가연성 천연가스, 금속광산물, 선박부품)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 특정중요물자 소관 부처는 특정중요물자 확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에게 사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에게도 특정중요물자에 대한 조사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나. 특정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기본지침

❍ 일본은 특정사회기반(기반시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업종** 기반시설의 중요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14개 업종**은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트럭운송, 외항화물(국내항만과 외국항만 간 운송을 위한 선박 보관화물), 항공, 공항,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사업을 말한다.
- 특정사업기반 사업자가 중요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는 사전에 소관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특정사업기반 사업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처벌할 수 있다.

❍ '특정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기본지침'은 각 산업실태에 따라 **사업규모**와 **대체 가능성**을 요건으로 **특정사회기반 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사전심사에서는 특히, ① 특정사회기반 사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중요설비**의 **공급자**가 **외부**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② **특정사회기반 설비**가 **특정방해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를 불식시키는 **리스크 관리**를 강구하고 있는지, ③ **특정사회기반**의 중요설비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④ 일본이나 **동맹국 기반시설**에 대한 **방해행위**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특정사회기반 14개 업종**과 「사이버보안기본법」상 **주요 인프라 14개 분야**는 규율 대상과 취지에 있어 차이가 있다.

- 「사이버보안기본법」은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된 기본법이다. **「사이버보안기본법」**의 **주요 인프라**는 **중점방호분야**를 **지정**한 것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규율대상이 아닌 **항만운송사업**과 **창고업, 케이블TV, 석유화학공업, 의료진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다.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 **일본 정부**는 **해양, 우주·항공, 바이오, 사이버·종합 영역**의 **50개 기술**을 **특정중요기술**로 **지정**하였고, **2023년 11월 현재**까지 **20건의 기술**을 **채택**했다.

- **특정중요기술이란** 첨단기술 중 그 **연구개발 정보**가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또는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자재**를 **외부**에 **의존**함으로써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은 **외부 부당이용**의 예시로 ① 관련 기술이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② 기술개발에 이용되는 정보가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③ 관련 기술에서 사용되는 자재나 서비스를 외부 행위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으로 상세히 정하고 있다.

❍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실시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에서 **특정중요기술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정중요기술의 **지원기금**과 **연구개발**의 **비전 수립** 및 특정중요기술을 **공모**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첨단기술정보 조사기관인 **일본싱크탱크**는 산업계와 학계에서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정부 정책**을 **보조**한다.

- **민간기업** 등(다른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포함)은 특정중요기술의 연구성과를 취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직**한다.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특정중요기술에 대해서는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기금**으로 **추진**한다.

라.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

❍ **일본**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한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군용** 및 **민간용**으로 활용 가능한 **발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출원 발명**의 **실시**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 특허출원된 서류에 특허출원 비공개 대상 기술이 기재된 경우 특허청은 해당 서류를 제1차 심사한 후 내각부에 송부한다. 내각부는 특허출원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할지 여부에 대해 제2차 심사한다.
- **보전조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보전조치**를 하게 되면 **출원취하 제한, 발명실시 제한, 발명내용 공개 금지, 발명공유 제한** 및 **외국출원 금지 효과**가 발생한다.

❍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은 국가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비공개 대상 기술로 정하고 있다.

- 2024년 5월 시행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 제12조는 **대량살상무기 전용기술**(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핵심 중요기술**(AI, 양자기술, 극초음속, 무인기기술) 및 **신영역기술**(우주, 사이버)의 **25개 특정기술**을 비공개 대상 기술로 정하고 있다.

- 특허출원자는 국내외에서 특허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실과 특허권에 기초한 제3자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3.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 신설 움직임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2023년 2월 내각관방은 '경제안보 기밀보호(Security Clearance)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24년 1월 '기밀보호제도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국가정보 보전조치**로, 안전보장상 **중요한 정보**로 **지정된 정보**(Classified Information)에 **접근**하는 **사람**을 **조사**하여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접근권**을 **부여**하고, 만일 **특정한 자**가 **국가정보 보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제도이다.
-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정보 관리 및 제공 규칙의 정비, 기술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과 **2024년 신설**되는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모두 기밀에 대한 조치이나, **규율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 **「특정비밀보호법」**은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보, 외교, 방위, 테러 대책의 **4개 분야 정보**를 **공무원**이나 **일부 민간기업 종사원**이 **유출**하거나 **부정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동법에서는 **특정비밀**을 **기밀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다.

- 이에 비해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표 1>과 같이 상기 4개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대응, 심사분석, 공급망분석, 국제 공동연구 개발 정보**까지 포함해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경제안보 기술정보를 기밀취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기밀 정도(Top Secret, Secret, Confidential)에 따라 다층적 기밀 분류체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표 1 특정비밀보호법과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

	특정비밀보호법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
정보	• 안보, 외교, 방위, 테러대책	• 안보, 외교, 방위, 테러대책 외에 우주·사이버 등 기술 정보
비밀	• 단층적 구조(특정비밀)	• 기밀 정도에 따른 다층적(3단계) 구조
대상	•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원	• 개인: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원 • 시설: 기밀정보 공유 민간사업
사생활 보호	• 본인 동의 필요	• 본인 동의 필요
벌칙	• 최고 징역 10년	• 기밀 정보유출: 최고 징역 10년 • 기타 정보유출: 최고 5년 구금

출처) 内閣官房, "経済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セキュリティ・クリアランス制度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最終とりまとめ", 2024.
조경희,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0호, 2014.

□ 시사점

❍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특정중요물자 지정,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 지정,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 가동, 특허 출원 비공개 대상 기술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특정중요물자와 우리나라 「공급망 기본법」상 경제안보품목은 모두 시행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일본 특정중요물자**는 지정 과정에서 지정 요지만 공개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정 분석내용은 **기밀사항**으로 **취급**되고 있어 **행정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경제안보품목별 소관부처가 공급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물자** 및 **원재료** 중에서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누구도 마스크를 필수물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급 위기**마다 **경제안보품목**이 **추가**되면 **수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있어 **민관 상호 간의 의견교환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첫째주 ~ 둘째주	문화체육관광	○ (2023) 한류 파급효과 연구 ○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와 시민 시청권 관련 인식
	환경노동	○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 이탄지 복원과 생태계서비스 가치. 2, 남수마트라주 페리기 지역을 대상으로 ○ 중국산 수입 변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	○ 2023년 테러정세 2024년 전망 ○ 테러 외연의 확장 : ISIS 귀환의 불안한 전조
	교육	○ OECD 교육지표. 2023 ○ 인재양성 데이터 국가 전략 제안
	기획재정	○ 개인 특성별 이질적 인플레이션율과 실질 소비 탄력성 ○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 주요국 예산안 : 2025회계연도 예산안(미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1, 기술패권 경쟁 분야(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2, 미래혁신 분야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3/4, 거대과학분야 /필수기반분야(차세대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 발전하는 휴머노이드 시장과 기술 동향 ○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국내 항공시장의 기류 변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 중국 바이어가 본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및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첫째주 ~ 둘째주	법제사법, 외교통일	○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외교통일	○ 금년 북한 '태양절' 기념행사 축소 의미 및 시사점 ○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미의 평가 및 시사점 ○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정치적·경제적 영향과 전망
	외교통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러시아의 대(對)아시아 경제협력 정책과 추진방향
	환경노동,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미국 수소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법제사법	○ 베트남 법령 위계 및 입법 체계
	행정안전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복합적 진단과 발전방향 ○ 이북5도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재정립 방향
	국토교통	○ 알고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 a.k.a 줍줍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주요국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 기여도 분석
	국방	○ 중동의 확전위기 전망 및 시사점
	보건복지, 행정안전	○ 한국의 안전보고서 = Safety report. 2023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셋째주	기획재정	○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 「제2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국가재정 및 8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분석 연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ESG 패러다임 확산과 디지털 ESG 개념화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북아프리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중국 전기차의 동남아 시장 선점 요인 및 시사점 ○ 최근 국내 금융그룹의 이종 업종간 협업 방향 ○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ICT Brief (2024-16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요약)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 거대한 연결의 시작
	법제사법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美유타주,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	○ 국가정보보호백서=National cybersecurity white paper. 2024
	보건복지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확산과 보험산업 ○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
	외교통일	○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 :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학술회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유증과 세계 영향 ○ 트럼프 재집권 시의 한미관계
	국토교통, 행정안전	○ 로컬 브랜딩을 통한 전남지역 도시재생 추진 방향 연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메타버스산업 분류체계 개발연구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셋째주	환경노동,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 영향 분석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 : 2023 하반기 기준
	국방	○미 국방부, 『상업용 우주 통합 전략서』 발표
	외교통일, 국방	○미국의 對이스라엘·하마스전 외교전략 : 변화와 전망
	법제사법, 외교통일	○미국의 러시아 국영자산 몰수 관련 입법의 의미와 한계
	행정안전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AI) 커버곡과 저작권 침해
	보건복지, 행정안전	○재난취약집단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무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5월 넷째주	행정안전	○(2014-2024) 안전혁신 10년, 재난안전관리의 변화와 과제: 제1차 재난안전정책세미나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대형산불의 증가, 진단과 과제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토교통	○1:1,000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이행계획 연구 ○서울형 보행일상권 구현 위한 일상생활권과 일상시설 탐색 연구 ○전라남도 섬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AI 기술 특이점 도래에 대응하는 제조업 SW 핵심인재 확보 전략의 필요성: AI로 인한 미래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규제·데이터·인력이 결정 ○멀티모달 AI 경쟁과 다가오는 AGI(범용인공지능) ○미국 관리예산실(OMB)이 발표한 AI 정책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넷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AI반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 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 고찰 ○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건복지, 국토교통	○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획재정	○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방안 연구 ○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면제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
	법제사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건복지	○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보건복지, 여성가족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요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농작업 대체를 위한 지능형 첨단로봇의 개발 동향
	국방	○ 미국 학자가 본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 ○ 우크라이나군의 독자형 신병 충원 체계와 함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행정안전	○ 오픈AI 소라(Sora) 기술이 공공행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노동	○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쟁점 : 옹호 논리의 현실성 점검 및 비판 지점 ○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국회토론회
	문화체육관광	○ 일본 웹툰 시장을 흔든 한국 웹툰의 영향력
	여성가족, 교육	○ 폭력예방교육 정책포럼
	외교통일, 국방	○ 한국전쟁에서의 소국가 해군외교 : 덴마크와 MS Jutlandia호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지원 사례

1 경기도 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의견24-0045, 2024. 3. 21.]

□ 질의요지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를 전제함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법관 ·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항),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제2호) 및 **지방의회의원**(제3호)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항),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11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제1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가 되도록 규정(제3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의 구성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령** 등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주체**이고 **효력발생 요건**으로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고 **공포·시행**하는 **규칙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는 법령에 명문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규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내부운영”의 의미**에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내부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속 직원의 임용·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제7조제5항), 결격사유(제7조제6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달리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의회규칙**에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의장의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추천”이란** 문언적으로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외부인사 등 제3자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는 것** 자체가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제3자가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 없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게 되고, 임명·위촉의 범위도 축소될 것**이므로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추천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일 뿐이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그 추천에 **구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경기도의회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위원회**의 **일부 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는 것이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인사규칙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교섭단체의 대표위원 개인에게 인사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권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 아닌 “교섭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의견24-0070, 2024. 4. 15.)

□ 질의요지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그 밖에도 해당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성질의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살펴보면,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에 따르면, **통일플러스센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및 그 상위법률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의 사업**(제3호)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정부"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정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제1호),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통일부장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의 설치·운영**하게 **하는 바**에 **따르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때**에 비로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 결정**과 **책임** 아래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독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통일부훈령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각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제12조)및 **자료제출의무**(제13조제1항)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플러스센터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3조제3항), **이러한 규정**들은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호**에서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규율 목적 및 범위가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위임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 5. (생 략)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법제처 24-0019, 2024. 4. 30., 새만금개발청】

□ 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하나로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함) 등급 요건(이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이라 함)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외국투자가”라 함)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회답**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새만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뒤에 괄호를 두어 ‘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인 경우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부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안에 규정된 신용평가 등급 요건은 그 괄호 앞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제7호)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에서는 **“외국투자가”**를 같은 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제5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제6호)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새만금사업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를 법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의 자격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아닌**,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새만금사업법령**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8.·9. (생 략)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③ (생 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생 략)

② (생 략)

2 시·도지사가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053, 2024. 4. 30., 서울특별시】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함)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소속 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정**하여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권한 중**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지시**”(제8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제9호) 등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시정명령 · 지시**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이하 “제재처분등”이라 함)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 · 지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서는 ①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호) ②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제6호) ③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10호) 등에 대해 **시정명령 ·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④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2항제3호), 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제2항제5호) 등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8호·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관련 규정의 위반'**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제재처분** 등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시·도지사가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재처분** 등의 **원인행위**로서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에는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한 **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 **의심**되어 **조사**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자**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시·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은 2014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25727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되었는데, 같은 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에 **지방국토관리청**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대금체불, 불공정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왔으나 **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 조사** 및 **검사 권한**이 **없어** 일부 건설업체가 **조사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권한**을 **명시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시·도지사**가 해당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을 이유로 **시·도지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다. (생 략)

2.·3. (생 략)

3의2. (생 략)

4. ~ 7. (생 략)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 14.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이 자료는 도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